

접 수	의안과 - (2013. . . . :)
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수 신 : 의 장

제 목 : 선택적 요일근로제에 관한 입법청원

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.

- 붙 임 1. 청원소개건의서 3부
2. 청 원 서 3부. 끝.

2013년 12월 2일

청 원 인

성 명 : 황 승 욱 외, 법 인 : 대한민국청소년의회

주 소 :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금호어울림 1901호

전화번호:070)7804-8838(휴대전화:010-3125-6068)

소 개 의 원 :

(인) 외

인

						의 장
담당자	청원담당	과 장	국 장	차 장	총 장	

청원소개건의서

청원인	주소 :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5동 금호어울림 1901호
	성명 : 황승욱
건명	선택적 요일근로제에 관한 입법청원
소개년월일	2013년 12월 2일
<p>소개의견-></p>	

소개의원
청원서
인

1. 제안이유

2013년 현재 주민등록 기준 전국 인구 5,100만명 중 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)인구는 2,520만명으로 전국인구의 49.4%가 수도권에 몰려 살고 그 중 서울·인천의 1km²당 인구밀도는 1만6700명으로 OECD국가의 도시 중에는 최고의 밀도입니다. 때문에 다 같이 쉬는 주말이면 평일에도 포화상태인 주요 서울시내 간선도로들은 마비가 되버리며 다 같이 출·퇴근 하는 평일의 도로들과 지하철 등 대중교통 역시 굉장히 혼잡합니다. 또한 수요 공급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자영업의 창업대비 폐업율이 85%가 넘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국가 경제 발전을 일부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. 확실화된 근무형태를 개인·업무·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 하기위한 유연근무제가 실행되고 있지만 그 혜택이 공무원에 집중되어 있고 이미 풀 타임(full-time), 정규직 근로자 중심으로 이뤄져 온 우리나라의 고용구조상 효과가 미미합니다.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국민의 여가를 증진해 삶의 질을 높이며 국가 경쟁력을 향상을 위한 선택적 요일근로제에 관한 청원을 합니다.

2. 주요골자

유연근무제(선택적 시간근로제)	개정문
<p>① 근로기준법</p> <p>1.관련 주요법제: 근로기준법 제2조, 제18조, 2.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</p> <p>② 탄력근무제(시차출퇴근제)</p> <p>③ 근무시간 선택제</p> <p>④ 집약근무제</p> <p>⑤ 재택·원격근무제,</p> <p>⑥ 집중근무제</p> <p><각 제도는 근로기준법,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법률에 근거></p> <p>-국가기관 관련 법</p> <p>① 국가공무원법</p> <p>1.제26조의 2</p> <p>② 전자정부법</p> <p>③ 국가공무원 복무규정</p> <p>1.제10조 제2항 “공무원은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(이하 ”유연근무“라 한다)를 신청할 수 있다.</p> <p>2.제10조 제3항 “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,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·승진 및 근무성적 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.”</p> <p>④ 공무원 임용령에 근거</p> <p>제 57조의 3</p>	<p>근로기준법 제18조의 1</p> <p>①선택적 요일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 일수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결정되어야 한다.</p> <p>국가 공무원법 제26조의 2</p> <p>① 국가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국회규칙, 대법원규칙, 헌법재판소규칙,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 근무일자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.</p> <p>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(통상 근로자로의 전환등)</p> <p>①사용자는 가사, 학업 그밖의 이유로 근로자가 선택적 요일근로제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를 선택적 요일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</p>
<p>청원인 성명 : 오주희</p>	

청원인 주소 :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
청원인 전화번호 : 02)851-0585

【별첨 1】

청원인 서명날인부

【별첨 2】

소개의원 서명날인부

청원제출서류 기재요령

1. 청원제출서류는 청원제출용지, 청원소개의견서, 청원서 각각 3부씩(이중 2부는 사본)이며,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.

2. 청원제출용지

- ① 「제목」은 청원요지가 분명하도록 하되 간략하게 정해 주십시오.
- ② 「청원인 주소, 전화번호, 성명」란에는 대표자의 것만을 기재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「성명」란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기재하여 주십시오. 「날인」란에는 대표자의 실인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외 청원인은 인원수만 기재하여 주십시오.

[예] 성명 : ○○주식회사

.....

대표이사 홍길동 (인) 외 24인(법인)

- ③ 소개의원은 1인 이상의 현역 국회의원이면 가능하며 별첨의 청원소개의견서를 첨부시켜야 합니다.
- ④ 의원인장은 사무처 총무과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.

3. 청원소개의견서

- ① 청원소개의견서는 당해 청원을 소개하는 국회의원이 작성합니다.
- ② 「소개의견」란에는 청원취지와 소개이유 및 의견을 기재합니다.
- ③ 의원인장은 청원제출용지에 날인된 인장과 동일해야 합니다.

표지나 말미에 청원인의 주소, 전화, 성명을 표시하고 날인하여야 하며, 구성에 있어 청원제목, 취지, 내용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.

- ②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는 대표자를 제외하고는 별첨의 청원인 서명날인부와 소개의원 서명날인부에 기재 및 날인하여 주십시오.
- ③ 청원서 용지규격은 가급적 정부공문서 용지의 기본규격인 에이4(A4)규격(가로210mm, 세로297mm)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.